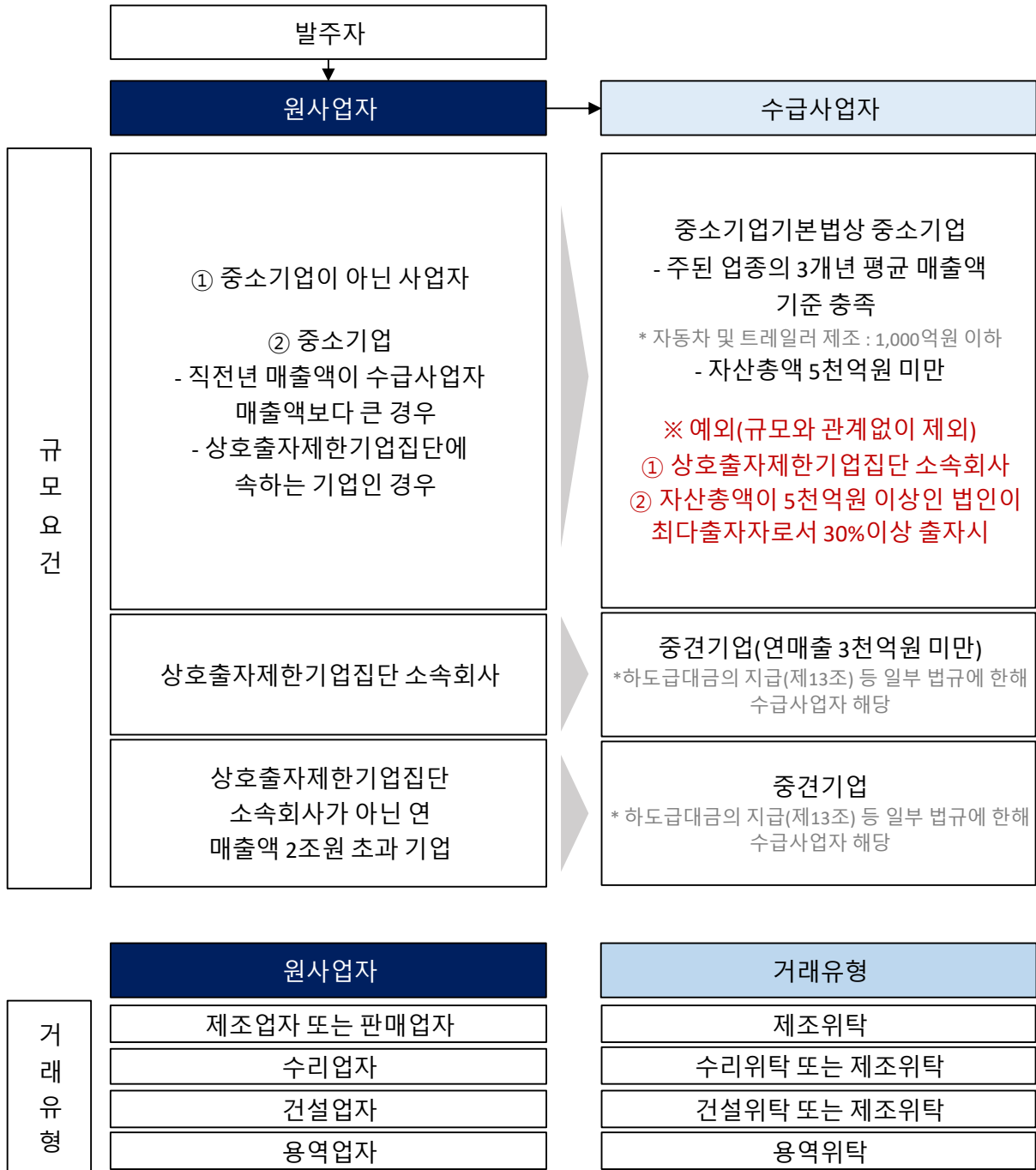
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제 1 장 하도급거래 개요

- 하도급거래 :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·건설·용역 등을 위탁하는 거래
- 사업자의 규모, 거래의 내용 등 요건 존재



※ 원사업자가 그 업(業)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만 하도급거래에 해당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※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사례

사례1. 건설업체 A가 의류제조업체 B에게 작업복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

→ 건설업체의 '업'은 작업복 제작이 아니므로 하도급거래에 해당x

사례2. 수급사업자가 무등록 사업자

→ '사업자'간 거래가 아니므로 하도급거래에 해당x

사례3. 제조위탁과 단순구매의 구분 기준

→ 위탁 받은 목적물을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위탁에 해당x

※ 사양·규격·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제조위탁

사례4.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납품

→ 단순구매에 불과하여 하도급거래 x

※목적물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가공을 한 경우,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음

사례5. 제조업체 A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

→ 자기소비용 일반사무용품 제작은 하도급거래에 해당x

사례6. 제조업체 A가 제조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a를 위탁제조 하는 경우

→ 제조업체가 제조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으로 하도급 거래에 해당함

사례7.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

→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이므로 하도급 거래에 해당함

사례8. 제조업체 A가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,가공,조립 등을 위탁하는 경우

→ 하도급거래에 해당함

사례9. 무역업체 B가 제조업체 A의 요청으로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

→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, 하도급거래에 해당x

사례10.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

→ 하도급거래에 해당함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제 2 장 하도급거래 단계별 의무 및 금지사항

계약체결 단계

- ① 서면 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
- ② 부당한 특약 금지
-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

계약이행 단계

- ① 부당한 위탁취소/수령거부 금지
- ②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
- ③ 부당한 반품 금지
- ④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
- 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
- ⑥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
- ⑦ 보복 및 탈법행위 금지

대금지급 단계

- ① 선금금 지급 의무
- ② 감액금지
-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
- ④ 부당 대물변제의 금지
- ⑤ 하도급대금 조정/협의 의무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제 3 장 계약 체결 단계 유의사항

유 형	내 용
서면 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(하도급법 제3조)	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,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서류를 보존(거래종료부터 3년)해야 함 - 서면 기재사항 : 위탁일, 목적물의 내용, 목적물의 제공 시기 및 장소,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
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(하도급법 제3조의4)	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약하는 계약조건 설정 금지 ①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※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,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발생한 비용 등 ② 예측할 수 없는 사항(천재지변 등)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③ 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약정 등
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(하도급법 제4조)	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금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의 경영적자,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제 4 장 계약 이행 단계 유의사항

유 형	내 용
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(하도급법 제8조)	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, 목적물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/지연해서는 안 됨
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	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* 기간 내 미통지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
부당반품 금지 (하도급법 제10조)	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해서는 안 됨 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
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(하도급법 제12조의2)	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, 물품, 용역,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
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(하도급법 제12조의3)	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됨 ※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으면 요구 가능 -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※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

■ 기술자료의 해당 요건

구분	하도급법	상생협력법
비공지성	요구되지 않음	요구되지 않음
경제적 유용성	요구됨	요구됨
비밀관리성	요구됨	요구되지 않음

-- [기술자료의 해당 요건 판단] -----

- 기술자료 판단시 비공지성(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)은 요건 아님
- 기술자료는 해당 내용 자체로 제품 제작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제작에 참고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정도로도 '경제적 유용성'이 있다고 인정됨
ex) 도면(제작도면, 조립도면, 용접도면 등), 회로도, 부품목록 등
- 경제적 유용성, 비밀관리성 판단은 공정위 심사 지침대로 폭넓게 인정

■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(하도급법 제12조의 3)

- 1항 :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됨 → **원칙적 금지**
다만,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→ **예외적 허용**
- 2항 :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,
법정기재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
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
→ **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**
- 3항 :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법정기재사항이
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함 → **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**
- 4항 :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
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→ **유용 및 유출 금지**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※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

■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법정기재사항

기술자료요구서	비밀유지계약서
1)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)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)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)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) 요구일, 제공일 및 제공방법 6)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	1)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)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3)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)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5)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) 4), 5)의 위반에 따른 배상 7) 기술자료의 반환 및 폐기 방법과 절차

■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주요 개정사항 등

-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에서 '합리적인 노력' 문구를 삭제
→ 보다 폭 넓은 비밀관리성 인정
-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
-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탈취의 별도 유형으로 추가
- 조사개시 시효 확대(3년 → 7년)
→ 납품 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함
※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기한 연장(3년 → 7년)
-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
- 기술자료 등에 대한 수급사업자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추가

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유 형	내 용
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(하도급법 제18조)	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※ 경영상 정보의 종류 -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원가정보 -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정보 -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(제품 개발, 생산 계획, 판매 계획, 신규투자 계획 등) -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(거래처 명부,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납품 조건 등) -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
보복조치 금지 (하도급법 제19조)	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,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③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④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
탈법행위의 금지 (하도급법 제20조)	원사업자는 우회적은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제 5 장 대금지급 단계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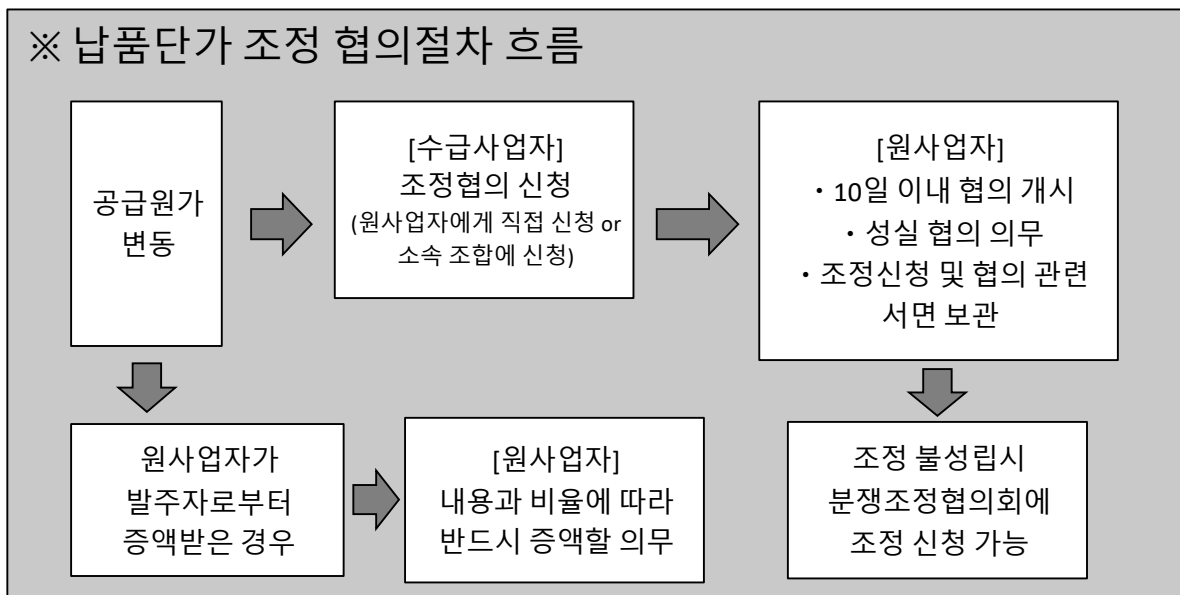
유 형	내 용
선급금 지급 의무 (하도급법 제6조)	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,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* 지연시 이자 지급 의무
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(하도급법 제11조)	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됨 ※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함 - 감액시 그 사유와 기준 -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수량, 감액금액 및 방법 -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
대금지급 의무 (하도급법 제13조)	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-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봄 -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급기일로 봄 -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※ 대금지급 의무는 연 매출액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됨(수급사업자 해당 요건은 1페이지 참고)
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(하도급법 제17조)	다음의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됨 -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등이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-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, 회생절차개시 등이 있는 경우 -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고,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※ 대물변제를 하기 전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함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제 5 장 대금지급 단계 유의사항

유 형	내 용
설계변경 등에 의한 대금 조정 (하도급법 제16조)	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 설계변경,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함 ※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,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- 발주자로부터 증액/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- 발주자로부터 증액/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/감액해야 함
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(하도급법 제 16조의 2)	수급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-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-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등이 변동되어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-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단계적으로 대금을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하락율이 인하율보다 낮은 경우

※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흐름

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제 6 장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제재 사례

사례1 유통사 G의 경제적 이익 요구 행위

■ 사건개요

- 유통업체 G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함
- '16.11~'19.9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 68.8억원, 판촉비 126.1억원을 수취함
- 또한 '20.2~'21.4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27.4억원을 수취함
→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(243.7억원)

■ 위법성판단

- 수급사업자들의 G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및 계약서상 조건과 상관 없이 자신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

사례2 배터리회사 S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

■ 사건개요

- S는 '18.5월 중국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급사업자 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(B)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함
- '15.8~'17.2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
→ 시정명령, 과징금 부과(2.7억원)

■ 위법성판단

-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(직접 작성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보유로 인정)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자료를 유용함
-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필요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

사례3 건설사 L의 부당위탁취소 및 서면미교부 행위

■ 사건개요

- L은 '18.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함
- '19.3월 L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함
- '19.3월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등 공사 내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
→ 처분 : 시정명령, 과징금 부과(3.6억원)

PLAKO	가이드라인	문서번호	
		제정일자	
	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	개정일자	2024. 6. 13
		개정번호	1 次

■ 위법성판단

-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함
- 추가 및 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

참고) 하도급거래 의무/금지 사항 정리

구 분		내 용
원 사 업 자	의무 사항 (9개)	① 서면 발급 및 서류보존 ② 선급금 지급 ③ 내국신용장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⑤ 하도급대금 지급 ⑥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⑦ 관세 등 환급액지급 ⑧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⑨ 원가 등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
	금지 사항 (13개)	① 부당한 특약 ② 부당한 대금 결정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 ④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⑤ 하도급대금 지급 ⑥ 하도급대금 감액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청구 ⑧ 부당한 경제적 요구 ⑨ 기술자료제공요구/유용 ⑩ 부당한 대물변제 ⑪ 부당한 경영간섭 ⑫ 보복조치 ⑬ 탈법행위
발주자 의무사항		하도급대금 직접지급
수급사업자 의무·준수사항		① 서류보존 ② 신의성실이행,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금지 ③ 건설 하도급대금 계약이행보증

- 부 칙 -

1. 본 규정은 2024년 6월 13일부로 시행한다.